

부산광역시 사하구을속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2
----------	-----

제출일자 : 2005. 11. 22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 가. 을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신축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하구을속도 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장소 협소 등으로 2002. 10월 개관이후 대관 실적이 전무한 전시관리동 2층 취미교실(43.56㎡) 대관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을속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별표1의 시설사용료 징수기준과 관련하여 소공연장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
- 나. 관리동 취미교실(43.56㎡) 대관 폐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협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예고 : 2005. 10. 25 ~ 11. 14(20일간, 별도 의견 없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소공연장”을 추가하고 “취미교실”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사용범위) 회관의 시설 및 설비중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기본시설 : <u>대공연장, 연습실, 전시실, 취미교실, 회의실, 테니스장, 놀이마당</u></p> <p>2. (생략)</p>	<p>제4조(사용범위) ----- -----</p> <p>1. 기본시설 : <u>대공연장, 소공연장, 연습실, 전시실, 회의실, 테니스장, 놀이마당</u></p> <p>2. (현행과 같음)</p>

[별표1] <개정 >

을속도문화회관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구분	규모	단위	사용료		비고	
			평일	토·일 공휴일		
대공연장	708석 (장애인석 8석별도)	오전	130,000	3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식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단, 1개소에 한함) 	
		오후	180,000	300,000		
		야간	250,000	300,000		
	제1연습실	148.8㎡	1일	110,000		좌 동
			오전	30,000		
		오후	30,000			
제2,3연습실	47.6㎡	1일	30,000	좌 동		
개인연습실	28.86㎡	1일	10,000	좌 동		
소공연장	232석 (장애인석 4석별도)	오전	60,000	120,000		
		오후	80,000	120,000		
		야간	100,000	120,000		
전시·관리동 (지상1층)	제1전시실	261.36㎡	1일	42,000	50,000	
	제2전시실	108.9㎡	1일	17,000		21,000
	제3전시실	87.12㎡	1일	14,000		
전시·관리동 (지상2층)	회의실	217.58㎡	1회	80,000	100,000	
	테니스장	면당 (8면)	1일	10,000	좌동	
부지내	놀이마당	1개소	1회	30,000	좌동	

※ 초과 사용료의 계산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가산 적용한다. 다만, 계속 사용 시 그 중간에 비어 있는 시간은 제외한다.

1. 30분 미만 : 당해 사용료의 20%
2.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당해 사용료의 50%
3. 1시간 이상 : 다음회 사용료의 전액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단 위	사용료	비 고
피아노	그랜드형(외산)	1회	40,000	
	그랜드형(국산)	1회	20,000	
	어프 라이트	1회	10,000	
무대조명	대공연장	1시간	30,000	○ 무대장식 작업 및 조명 사용료는 기본료의 50%
	소공연장	1시간	10,000	
무대시설	승강무대	1회	40,000	
	음향 반사판	1회	20,000	
	덧마루	1회	20,000	
음향시설	녹음 D·A·T	1회	30,000	○ 테이프 구입은 사용자 부담
	음 카세트테이프	1회	10,000	○ 테이프 구입은 사용자 부담
	유선마이크	1회	2,500	○ 유선마이크 기본2개는 무료
	무선마이크	1채널	20,000	○ 무선마이크 추가분 1채널당 10,000원 가산
	무선인터컴	1회	20,000	○ 1셋트는 최대 8개
냉 방	1시간	연료시가로 결정	○ 시간당 연료시가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	
난 방	1시간	연료시가로 결정	○ 시간당 연료시가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	
효과시설	드라이아이스	1회 작동시	10,000	○ 드라이아이스는 사용자 부담
	스모그기	1회 작동시	10,000	○ 스모그액은 사용자 부담
	영사기(35mm)	1시간	20,000	○ 영화상영의 경우 사용료 면제
	빔프로젝트	1시간	10,000	○ 영화상영의 경우 사용료 면제

(주) 위 표중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기 타

(단 위 : 원)

시설명 구분		단 위	사용료	비 고
중계방송	T V	1회	40,000	○ 녹화일 경우에도 동일 ○ 영화 촬영 및 비디오 녹화의 경우 TV중계방송(사용료)적용 (소형 Handy cam 8m/m이하 제외)
	라디오	1회	20,000	
○ 무대의상 ○ 대·소도구 ○ 기타 물품		1회	취득가액의 3%	

(주) 위 표중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1]

울속도문화회관시설사용료징수기준(제8조제1항 관련)

[별표1]

울속도문화회관시설사용료징수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

시설구분	규모	단위	사용료		비고	
			평일	토·일·공휴일		
대공연장	708석 (장애인석 8석 별도)	오전	130,000	3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일·공휴일 차등없이 30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신설>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단, 1개소에 한함) 	
		오후	180,000	300,000		
		야간	250,000	300,000		
	제1연습실	148.8㎡	1일	110,000		좌동
제2,3연습실	47.6㎡	오전	30,000	좌동		
		오후	30,000			
		야간	50,000			
개인연습실	28.86㎡	1일	10,000	좌동		
<신설>						
전시·관리동 (지상1층)	제1전시실	261.36㎡	1일	42,000	50,000	(생략)
	제2전시실	108.9㎡		17,000	21,000	
	제3전시실	87.12㎡		14,000	17,000	
전시·관리동 (지상2층)	취미교실	43.56㎡	1회	20,000	좌동	○ 1회라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임.
	회의실	217.58㎡	1회	80,000	100,000	(생략)
부지대	테니스장 (8면)	1면	1일	10,000	좌동	(생략)
	놀이마당	1개소	1회	30,000	좌동	(생략)

(생략)

시설구분	규모	단위	사용료		비고	
			평일	토·일·공휴일		
대공연장	708석 (장애인석 8석 별도)	오전	130,000	3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일·공휴일 차등없이 30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신설>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단, 1개소에 한함) 	
		오후	180,000	300,000		
		야간	250,000	300,000		
	제1연습실	148.8㎡	1일	110,000		좌동
제2,3연습실	47.6㎡	오전	30,000	좌동		
		오후	30,000			
		야간	50,000			
개인연습실	28.86㎡	1일	10,000	좌동		
<신설>						
연습실	232석 (장애인석 4석 별도)	오전	60,000	12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강당은 120,000원으로 함. ○ 예선장(소강당)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배출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포함) ○ (-----) 	
		오후	80,000	120,000		
		야간	100,000	120,000		
전시·관리동 (지상1층)	제1전시실	261.36㎡	1일	42,000	50,000	(현행과 같음)
	제2전시실	108.9㎡		17,000	21,000	
	제3전시실	87.12㎡		14,000	17,000	
전시·관리동 (지상2층)	취미교실	43.56㎡	1회	20,000	좌동	○ 1회라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임.
	회의실	217.58㎡	1회	80,000	100,000	(생략)
부지대	테니스장 (8면)	1면	1일	10,000	좌동	(현행과 같음)
	놀이마당	1개소	1회	30,000	좌동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1]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단위	사용료	비고
피아노	그랜드형(외산)	1회	40,000	
	그랜드형(국산)	1회	20,000	
	어프 라이드	1회	20,000	
무대조명	대공연장	1시간	30,000	(생략)
	< 신설 >			
무대시설	승강무대	1회	40,000	
	음향반사판	1회	20,000	
	덧마루	1회	20,000	
음향시설	음속	D·A·T	1회	30,000 (생략)
		카세트테이프	1회	10,000 (생략)
	유선마이크	1회	2,500 (생략)	
	무선마이크	1채널	20,000 (생략)	
	무선인터콤	1회	20,000 (생략)	
냉 방	1시간	면표시가로 결정	(생략)	
난 방	1시간	면표시가로 결정	(생략)	
효과시설	드라이아이스	1회 작동시	10,000 (생략)	
	스모그기	1회 작동시	10,000 (생략)	
	영상기(35mm)	1시간	20,000 (생략)	
	빔프로젝트	1시간	10,000 (생략)	

(생략)

3. 가 타

(생략)

[별표1]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단위	사용료	비고
피아노	그랜드형(외산)	---	-----	
	그랜드형(국산)	---	-----	
	어프 라이드	---	10,000	
무대조명	대공연장	---	-----	(현행과 같음)
	소강당	1시간	10,000	
무대시설	승강무대	---	-----	
	음향반사판	---	-----	
	덧마루	---	-----	
음향시설	음속	D·A·T	---	----- (현행과 같음)
		카세트테이프	---	----- (현행과 같음)
	유선마이크	---	----- (현행과 같음)	
	무선마이크	---	----- (현행과 같음)	
	무선인터콤	---	----- (현행과 같음)	
냉 방	---	-----	(현행과 같음)	
난 방	---	-----	(현행과 같음)	
효과시설	드라이아이스	---	-----	(현행과 같음)
	스모그기	---	-----	(현행과 같음)
	영상기(35mm)	---	-----	(현행과 같음)
	빔프로젝트	---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가 타

(현행과 같음)